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방법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1. 사회통합전형의 지원자격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년 4월에 교육부가 제공하던 기준중위 소득 50%, 60%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미제공
→ 2020학년도는 2019학년도 기준중위 소득 50%, 60%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적용
→ 2021학년도부터는 ②의 경우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⑤의 경우 교육비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9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3.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가.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2배수 선발)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학과별 전형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 가능)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4. 기타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20학년도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분위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296,676	-	-	-
2분위	2,140,180	60,531	22,221	61,196
3분위	2,785,595	89,106	66,766	89,960
4분위	3,411,996	109,823	99,177	111,062
5분위	4,053,168	129,509	126,148	131,194
6분위	4,741,318	152,556	153,801	154,873
7분위	5,527,505	176,306	183,030	179,128
8분위	6,601,411	206,709	221,052	210,566
9분위	8,405,530	274,122	299,062	284,899

※ 소득기준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 전국 2인이상 비농가, 2018년 1분기~4분기 기준